

# 2026년 파주시 무공해건설기계(전기자게차) 보급사업 공고

대기환경 개선을 위하여 「2026년 파주시 무공해건설기계(전기자게차) 보급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5. 6.

## 파 주 시 장

### 1 사업 개요

○ 보급대수: 1대

※ 보급대수는 차량별 보조금 차등 지원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변동될 수 있음

○ 접수기간: 2026. 5. 11.(월) 09:00 ~ 11. 30.(월) 18:00 ※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 예산 범위 초과 여부와 관계없이 자격부여 가능

○ 사업예산: 1,000만원(국비 50%, 시비 50%)

○ 선정기준: **출고·등록순**

○ 지원차종: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 게재된 차량 **붙임 참조**

· 「건설기계관리법」,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대한 규칙」 등 관계 법령에 의한 각종 형식 승인신고, 검정 및 안전기준 등을 충족하고,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에 한함

※ 공고일 이후 기후에너지환경부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차량은 추가 공고 없이 파주시의 보조금 지원 대상에 포함됨

## 2

### 신청대상 및 자격

- 신청대상: 신청서 접수일 이전 연속하여 파주시에 60일 이상 거주하거나 파주시에 60일 이상 사무소를 두고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구 분 (신청유형)	대상 자격
개 인	· 파주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인 자
개인사업자	· 대표자(만 18세 이상)의 주소지가 파주시인 사업자 ※ 법인이 아닌 비영리민간단체, 사단·재단 등의 단체는 개인사업자로 간주 ※ 개인사업자는 사업자와 개인(대표자)으로 중복지원 불가
법 인	· 파주시에 사업장(본사, 지사, 공장, 건설기계 대여업 등)이 위치한 법인 및 기업, 단체
공공기관	· 파주시에 소재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중앙행정기관 제외)
외국인	· 파주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의 재외국민(F-4비자), 국내영주권자(F-5비자)로 차량 출고일자 기준으로 국내 체류기간이 2년 이상이 남아있는 자
참고사항 (리스·렌트용)	· 리스·렌트업체 명의로 신청·신고 시 → 업체(법인) 주소지가 파주시에 60일 이상 주소를 둔 경우 · 실제 이용자 명의로 신청·신고 시 → 실이용자 주소지가 파주시에 60일 이상 주소를 둔 경우(법인은 소재지) 신청

#### 보조금 미지원 대상

- 무공해건설기계 제작·수입사가 자사 차량을 구매 또는 수입하는 경우  
(단, 리스·렌트용 구매는 제외)
- 연구기관이 시험·연구를 목적으로 구매하는 경우
- 중앙행정기관이 무공해건설기계를 구매하는 경우
- **건설기계 등록증 또는 건설기계 등록원부 내 최초 사용본거지가 '파주시'가 아닌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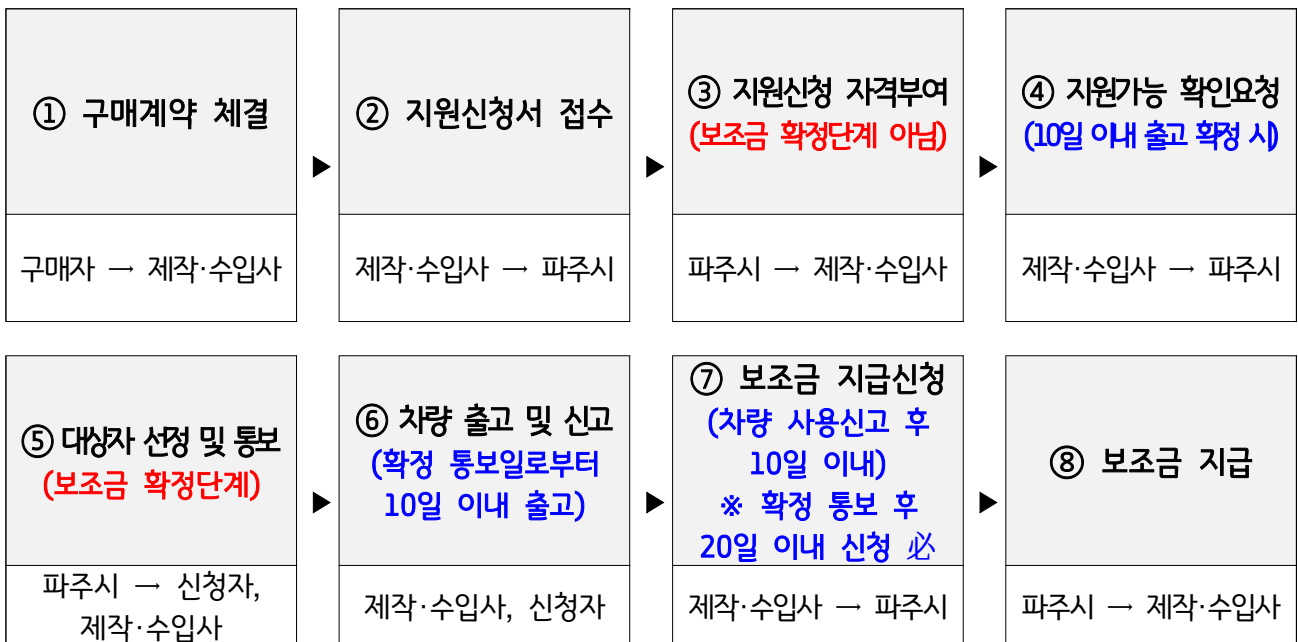
- 지원가능 대수: 개인·개인사업자·법인·공공기관 1대
- 지원금액: 무공해건설기계(전기지게차) 성능 및 규모 등에 따라 차등 지원
- 신청자격(필수조건) ※ **공고일 이후 계약한 차량에 대해서만 보조금 지급**
  - 구매 지원신청서 제출 전 무공해건설기계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 체결  
※ 구매계약서에 계약번호 및 출고 예정일자 기재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무공해건설기계 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환수에 관한 사항, 무공해건설기계 보조금 지급 신청 유의사항

동의서에 확인 및 서명

- 무공해건설기계를 **최초 등록하는 사용본거지를 반드시 '파주시'로 등록**
  - ※ 건설기계 등록증 내 최초 등록 사용본거지가 '파주시'가 아닌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 구매신청자는 지방세에 대한 체납 사실이 없어야 함
- **구매신청 자격 부여일로부터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만 신청**
  - ※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차량대금 납부 및 세금계산서 발급·제출)되지 않을 경우, 대상자 선정이 취소되거나 대기자로 변경될 수 있음
- 공동명의로 차량을 구매·등록 시 주민등록등본상 동일세대원(가족)에 한해서만 지원 가능

### 3 신청절차 및 대상자 선정

#### ○ 민간부문



※ 모든 서류는 원본대조필 날인 후 1개의 파일(통합)로 첨부(원본 별송 X)

#### ① 구매계약 체결

- 무공해건설기계 구입을 희망하는 자는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지원신청서(증빙서류 포함)를 작성하여 자동차 제작·수입사에 제출

## ② 지원신청서 접수

- 제작·수입사는 자격 부여일로부터 2개월 이내 출고가 가능할 경우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신청서(증빙서류 포함) 제출

## ③ 지원신청 자격부여

- **신청서 접수순**으로 지원신청서를 검토하여 결격사유(거주기간, 이중신청 등) 확인
-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보조금 지원신청 자격’ 부여 및 통보
- 해당 단계는 단순 신청 자격에 적합하다는 의미이므로, **자격부여 상태에서 차량 출고 시 보조금 지급 불가**

## ④ 지원가능 확인요청

- 제작·수입사는 **차량 출고가 확정되는 시점(출고 전 10일 이내)**에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지원가능 여부를 확인
  - ※ 출고일자가 확정된 차량만 지원가능 확인 요청 가능(배정화면 등 전산 캡처사진 첨부)
- 여러 대의 차량이 동시에 요청할 경우, **지원가능 확인 요청순**으로 검토

## ⑤ 대상자 선정 및 통보

- **지원가능 확인요청순으로 검토** 후 예산 범위 내에서 대상자 선정
  - ※ 대상자 선정일, 차량출고기한(대상자 선정일로부터 10일 이내), 차량등록 및 보조금 신청 기한(출고 이후 10일 이내) 안내[신청자 및 제작·수입사로 문자 통보]

## ⑥ 차량 출고 및 신고

- 반드시 대상자 선정 문자 받은 후 진행
- **대상자로 선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출고되지 않을 경우, 대상자 선정 취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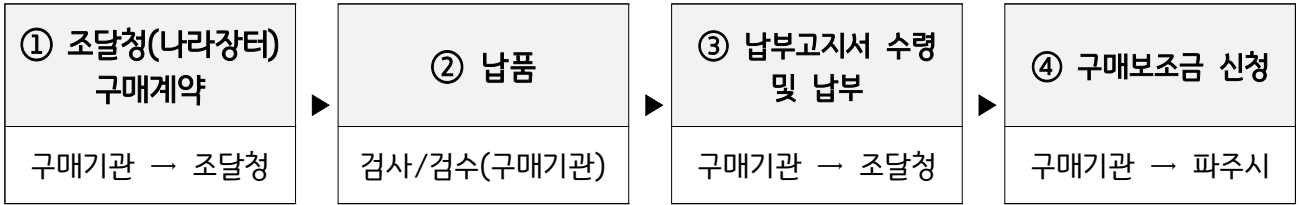
## ⑦ 보조금 지급 신청

- 제작·수입사는 **차량 출고·신고 후 10일 이내**에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으로 보조금 지급신청서(증빙서류 포함) 제출

## ⑧ 보조금 지급

- **보조금 지급신청순으로 신청서 검토** 후 제작·수입사로 보조금 지급
  - (구매자) 차량구매 대금과 보조금의 차액을 차량 제작·수입사에 납부
  - (제작·수입사) 파주시로부터 보조금(국비+시비) 수령
    - ※ **보조금 지급 처리 전 타 지자체로 전출하거나, 지방세 체납내역이 확인될 경우, 보조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
    - ※ 국고보조금 교부 지연, 신청 상황 등에 따라 지연될 수 있음

○ 공공부문



- 구매기관(공공기관)은 자체 예산으로 무공해건설기계 구매대금 납부 후 파주시에 보조금 지급 요청 가능 ※ 단, 보조금 지원 가능 여부를 파주시에 사전 확인

**4 제출서류**

※ 모든 발급 서류는 지원지급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서류만 인정

○ 지원신청 서류

구 분		제출서류
필수서류	공통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공해건설기계 구매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li> <li>※ 파주시 공고문에 있는 서식으로 작성 및 제출</li> <li>· 무공해건설기계 구매계약서(계약번호 및 출고예정일 필수 기재)</li> <li>※ 계약서 내 계약번호와 차종은 시스템에 입력한 계약번호와 차종과 일치해야 함</li> </ul>
	개 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내역 포함,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보여야 함)</li> </ul>
	개인사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내역 포함,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보여야 함)</li> <li>·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li> <li>※ 비영리단체일 경우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제출</li> </ul>
	법 인 공공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자등록증</li> <li>·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li> </ul>
	외 국 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국내거소사실확인서 등</li> <li>※ 국내 체류기간이 2년 이상 남아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li> </ul>
기타서류	공동명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등록등본</li> <li>※ 세대주와의 관계, 공동명의자 성명 및 생년월일 모두 보이도록 제출</li> </ul>

○ 지급신청 서류

구 분	제출서류
필수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공해건설기계 구매보조금 지급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li> <li>· 건설기계등록증</li> <li>※ 차량신고 소유자의 성명, 신고지 주소 등이 모두 보이도록 제출</li> <li>· 세금계산서(출고 증빙)</li> <li>· 사업자등록증(제작·수입사)</li> <li>· 통장 사본(제작·수입사)</li> <li>· 지방세 납세증명서</li> <li>· 청렴이행서약서</li> </ul>

## ○ 유의사항

- 아래 사항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 차량 출고 또는 보조금 지급 전 파주시 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 자격부여 단계에서 대상자 선정 전에 차량을 출고·등록한 경우
  - 대상자 선정일로부터 10일 이내 차량을 출고하지 아니한 경우
  - 차량 출고 이후 10일 이내 차량 등록 및 지급 신청을 아니한 경우
  - 건설기계 등록증 또는 건설기계 등록원부 내 최초 등록 사용본거지가 파주시가 아닌 경우
- 무공해건설기계 제작·수입사는 반드시 출고 확정시점 10일 이내에 구매 보조금 지원가능 여부를 파주시에 확인받아야 함
  - ※ 자격부여 상태에서 차량 출고 시 보조금 지급이 불가하며, 관련 사항에 대하여 파주시에 책임지지 않음
- 위장전입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보조금 환수대상임
- 보조금 지원대상자는 구매신청 자격 부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차량을 출고 (차량대금 납부 및 세금계산서 발급·제출)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대상자 선정에서 취소되거나 대기자로 변경될 수 있음
-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 이후 타 차종이나 연식변경 차량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임의로 변경할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을 취소함
- 지원대상자 선정 이후 추가 지원 대상 증빙서류 제출 시 예산 소진 상황에 따라 추가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음
- 취약계층(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이 구입 시 차량가액에 따라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수급대상, 임대주택 입주자격 등에서 탈락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관계 기관에 문의하기 바람
- 구매지원신청서상 보완이 필요한 경우 1차 7일, 2차 5일의 보완기한을 설정하며, 2차 기한까지 서류가 완비되지 않는 경우 대상자 선정 취소 또는 대기자로 변경될 수 있음
- 보조금 선점을 목적으로 2개월 이내 출고가 불가능함에도 신청서류 제출 및 구비서류 허위기재 등으로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당초 계약을 파기할 경우 보조금 지원대상자에서 취소되고 자동차 제작·수입사는 보조금 지원대상자가 계약을 취소할 시 파주시에 통보하여야 하며, 미 통보할 경우 추후 신청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등록 시 자동차 구매자의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가족)에 한하여 공동명의 등록이 가능함
  - 보조금 부당지원 예방을 위해 보조금을 지급받아 자동차를 구매한 자의 동일 세대원 외 세대가 다른 가족, 지인, 법인 및 단체와의 공동명의 불가
  - 공동명의는 대표소유자 1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대표소유자 1인에게 재지원제한기간(2년) 적용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 자동차 보유자의 자산 검증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파주시가 보조금 지급내역(지자체명, 지급금액, 지급일)을 자동차등록원부에 특기사항란 기재함

#### ○ 의무준수 사항

- 보조금을 지급받은 무공해건설기계 구매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79조의4제1항에 따른 의무운행기간(최초 등록일로부터 8년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미준수 사유에 따라 보조금 회수요율을 별도 적용함
-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을 판매하는 경우 해당 차량의 매수자가 잔여 의무운행기간 준수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간주함(보조금 반환 의무 포함)
  - ※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의무운행기간 관련 승계사항을 고지하여야 함
-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등록 말소(폐차·수출 등) 시에는 파주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아래<표>의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국비+시비)을 반납하여야 함
  - ※ 다만,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폐지 신고를 하려는 자에 대해서는 사용폐지를 사유로 보험사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보상금액이 해당 차량 구매 시 지불한 가격보다 높은 경우에 한해 그 차액을 회수\*
  - \* 차액 회수액은 법정 기준에 따른 보조금 회수액을 초과하여 회수할 수 없음
  - ※ 증빙자료 제출 미흡 등으로 차액 확인이 어려운 경우 법정 기준에 따른 보조금 전액을 회수할 수 있음

**<운행기간별 보조금 회수요율(%)>**

① 수출을 목적으로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전기차 사용기간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24개월 이상 30개월 미만	30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36개월 이상 48개월 미만	48개월 이상 60개월 미만	60개월 이상 96개월 미만
회수요율	70%	65%	60%	55%	50%	40%	30%	20%	0%

② 그 밖의 경우

전기차 사용기간	3개월 미만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9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12개월 이상 15개월 미만	15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18개월 이상 21개월 미만	21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24개월 이상 96개월 미만
회수요율	70%	65%	60%	55%	50%	40%	30%	20%	0%

## 6 기타사항

- 본 공고 이외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2026년 무공해건설기계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기후에너지환경부)」 및 파주시의 결정에 따름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에너지과 에너지산업팀(☎ 031-940-8465) 및 민원콜센터(☎ 031-940-4114), 무공해건설기계 제작·수입사로 문의

## 7 문의처

기관	주요 역할	연락처
기후에너지환경부 통합콜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공해건설기계 보급사업 관련 민원상담</li> <li>- 무공해건설기계 보급절차 등 일반적인 사항</li> <li>- 무공해건설기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li> </ul>	1661-0970
파주시 에너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공해건설기계 구매보조금 집행관련 업무</li> <li>- 보조금 지원 자격, 지방보조금 등 책정</li> <li>- 지원 대상자 선정 및 지급</li> </ul>	031-940-4114(콜센터) 031-940-8465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공해건설기계 지원대상 차량 확인</li> <li>· 무공해건설기계 구매 보조금 시스템</li> </ul>	www.ev.or.kr

- 붙임 1. 2026년 전지제차(배터리형) 차종별 보조금 지원금액 1부.
2. [별지 제1호 서식] 무공해건설기계 구매 지원신청서 1부.
3. [별지 제2호 서식] 무공해건설기계 구매보조금 지급신청서 1부.
4. [별지 제3호 서식]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1부.
5. [별지 제4호 서식] 무공해건설기계 말소 승인신청서 1부.

[붙임]

2026년 전기지게차(배터리형) 차종별 보조금 지원금액

제조·수입사	차 종	들어올림 중량(톤)	배터리종류	모터출력 (kW)	보조금(만원)		
					국비	지방비	총액
두산밥캣 코리아	B20SE-7(28.8kWh)	2.0	납산	17	175	175	<b>350</b>
	B25SE-7(31.68kWh)	2.5	납산	17	195	195	<b>390</b>
	B30S-7(38.4kWh)	2.9	납산	17	225	225	<b>450</b>
	B32S-7(38.4kWh)	3.2	납산	17	230	230	<b>460</b>
	B35S-7(38.4kWh)	3.5	납산	17	235	235	<b>470</b>
HD현대사이트 솔루션	25B-X(28.80kWh)	2.5	납산	15	200	200	<b>400</b>
	25B-X(31.13kWh)	2.5	리튬인산철	15	380	380	<b>760</b>
	30B-X(31.13kWh)	2.9	리튬인산철	15	385	385	<b>770</b>
	30B-X(33.60kWh)	2.9	납산	15	215	215	<b>430</b>
	35B-X(31.13kWh)	3.5	리튬인산철	15	400	400	<b>800</b>
	35B-X(33.60kWh)	3.5	납산	15	230	230	<b>460</b>
	25BE-X(28.8kWh)	2.5	납산	16.5	200	200	<b>400</b>
	30BE-X(40.0kWh)	2.9	납산	16.5	225	225	<b>450</b>
(주)클라크 머티리얼 핸드링아시아	LX25XE(17.66kWh)	2.5	리튬인산철	26	285	285	<b>570</b>
	LX25XE(26.57kWh)	2.5	리튬인산철	26	345	345	<b>690</b>
	LX30XE(26.57kWh)	2.9	리튬인산철	26	355	355	<b>710</b>
	LX30XE(35.33kWh)	2.9	리튬인산철	26	430	430	<b>860</b>
	LX35XE(26.57kWh)	3.5	리튬인산철	26	370	370	<b>740</b>
	LX35XE(35.33kWh)	3.5	리튬인산철	26	440	440	<b>880</b>

※ 향후 추가되는 차량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에 게재